

고

시

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362호

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(3차)변경승인 (천안신부 행복주택)

『공공주택 특별법』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천안신부 공공주택(행복주택) 건설사업 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07월 05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1. 사 업 명 : 천안신부 공동주택 건설사업(행복주택) (변경없음)

2. 사업시행자

구 분	기 정	변 경	비 고
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	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정관	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	
주 소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좌 동	

3. 사업개요

구 분	기 정	변 경	비 고
가. 대지위치	충청남도 천안시 신부동 72-16번지 일원	좌 동	
나. 사업면적(㎡)	14,994.30㎡	좌 동	
다. 대지면적(㎡)	14,727.30㎡	좌 동	
라. 연 면 적(㎡)	57,913.59㎡	53,579.78㎡	감 4,333.81㎡
마. 사업규모	아파트 4개동 (행복주택 총 700세대, 지하3층, 지상7~20층) 및 부대·복리시설	아파트 4개동 (행복주택 총 587세대, 지하2층, 지상7~20층) 및 부대·복리시설	
바. 구 조	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	좌 동	
사. 사 업 비	115,518,518 천원 (주택도시기금 36,721,300 천원)	121,220,271 천원 (주택도시기금 27,994,030 천원)	증 5,701,753 천원 (감 8,727,270 천원)
아. 사업기간	사업승인 고시일. ~ 2025. 06.	사업승인 고시일. ~ 2027. 08.	증 26개월

4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·지번·면적·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·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: [별첨1] = 변경없음

5.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

가. 사업시행에 따른 무상귀속 : [별첨2] = 변경없음

나.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 고시 : [별첨3]

다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 : [별첨4] = 변경없음

6.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: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(<http://www.eum.go.kr/>)에서 열람할 수 있음.
7. 기 타 : 관계 도서는 충청남도 도시건축과, 천안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(042-470-0652)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

[별첨3]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충남 천안시 신부동 72-16번지 일원 (변경없음)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천안 신부 행복주택 신축 및 도시계획시설(도로) 사업 (변경없음)
3.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(변경없음)

목 록	계	공동주택	기타시설	도시계획시설
				도로
면적(m ²)	14,994.30	14,727.30	-	267.00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(변경)

구분	기정	변경	비고
사업시행자	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정관	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	
주소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좌동	

5.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(변경)

: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착공 전 실시계획인가 신청